

순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0922-1	<p>1. 항만내 보관 야적장, 항만에서 선내로 운반시 필요한 장비(지게차, 크레인 등), 팔레트를 운반할 수 있는 장비(철재좌대), 컨테이너 등 별도 물류장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p>	<p>1. 제안요청서 <붙임2>의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표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됩니다.</p>
0922-2	<p>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인 이내로 제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최소40%로 제한되어 있는 바 5개업체 구성 시 2개업체만 지역업체로 참여시키면 구성 조건을 충족시키는지요? 참여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요?</p> <p>2. 도내운송에 대한 운송 부분(도내 대리점, 도내 판매용)은 이번 입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까?</p>	<p>1. 업체 수에 대한 제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5인 이내로 제한”에 대한 사항만 해당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업체의 지분율을 의미하기에, 지역업체 참여 수에 대한 제한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2. 도내 대리점 및 도내 판매용은 이번 입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p>

순 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0922-2	<p>3. 이번 입찰의 범위에서는 기존 판매사 물류센터 입고까지가 물류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물류센터 도착 이후 발생하는 팔레트 관련 업무의 책임과 사용료 및 회수비용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요?</p> <p>4. 현재 “휘오제주V워터” 운송과 관련하여 “제주삼다수” 운송과 달리 원바디 차량으로 제한하고 당일 발주, 익일 배송체제로 수행되는데 “제주삼다수”의 운송 방식으로 동일하게 운송하여도 됩니까? 즉 동일한 운송방식, 동일한 물류비로 운영이 가능합니까?</p> <p>5. 소량발주가 있더라도 추가 비용은 없다라고 하였으나, 기타물량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물류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p>	<p>3. 이번 입찰의 계약범위는 “우리공사-도내항-내륙항-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입니다. 제안자가 제출한 팔레트 운영 부분에 대하여는 낙찰 예정자 선정 이후 별도 협의합니다.</p> <p>4. 해당 내용은 “휘오제주V워터”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판매사의 유통정책으로서 별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발주시스템은 D-3일에 익주에 해당하는 운송물량을 발주하고 있습니다.</p> <p>5. 제안요청서 p.15의 “바”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순 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0922-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기준에서 사업자는 별도인데 동일인이 2개 회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1개 회사로 인정되는지 또는 별도의 회사로 인정되는지요? 2. 현재 팔레트 운영 프로세스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3. 1년 이상 계약기간 계약서 증빙자료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은 아니지만, 수년간 거래처와 건 단위로 지속적으로 거래한 계약도 1년 이상 계약에 포함되는 지요? 4. 권역별로 나누어진 운영구간 중 내륙항은 어느항을 선택해도 상관없는지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로 인정될 경우 참가자격이 배제됩니다. 입찰참가자격 구비 여부는 사실관계의 세부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으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에 관해서는 관련기관(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 및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자가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2. 팔레트는 우리공사에서 생산된 제품과 함께 최종 판매사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약범위는 “0922-2”의 3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지표는 계약기간을 중시하는 “안전성”에 대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평가방법에서 제시한 계약기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4. 항만에 대한 운영방안은 입찰참가자가 제안하여 운영되어야 할 사항이며, 우리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의 “36번” 질의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 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0922-3	<p>5. 제안서의 규격 및 작성지침에서 모두 무선철과 상철, 단면인쇄 조건으로 해야하는지요? 기술제안서를 좌철방식으로는 안되는지요?</p> <p>6. 제안서 작성 문서는 파워포인트로만 작성해야 하는지요? 또한 파워포인트 버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p> <p>7. 공고문 p.3의 “4. 사업참가구역”에서 명시한 판매처 물류센터 수와 제안요청서 p.12의 판매현황에서 명시한 물류센터 수가 상이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p> <p>8. 자격증 소지자 평가부분에 있어, 구비서류가 자격증 사본과 자격증 발급기관 증명서입니다. 현재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경우, 1개월 신청서를 받고 익월 10일 일괄 우편 배송시스템으로 제안서 제출기간내 제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류관리사의 경우 자격증 발급기관 증명서 대체로 가능한지요?</p>	<p>5. 제안요청서 p.19의 “V. 제안서 작성기준 및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6. 제안서 설명회(제안서 평가) 발표시 필요한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대로 PPT파일로 작성해야 합니다.</p> <p>7. p.12의 물류센터는 현재 “제주삼다수” 위탁판매사의 개수로서 “휘오제주V위터”를 판매하고 있는 물류센터 개수가 제외된 수량입니다. 제안요청서 p.14의 기타 물량에 대한 물류센터 수를 포함하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물류센터 수와 동일합니다.</p> <p>8. 물류관리사 자격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공사의 확인요청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와 상이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p>

순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0922-3	<p>9. 감귤 농축액 운송 시 냉동탑차 운송인지 아니면 냉동컨테이너 운송인지, 아니면 두가지 운송방법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요?</p> <p>10. 구비서류 중 물류사업 (표준)계약서 사본은 정형화된 표준 계약서 1부의 제출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거래처와 계약서의 사본을 뜻하는 것이지요?</p>	<p>9. 농축액 규격 및 출고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송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p> <p>10. 해당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의 “36번” 질의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0922-4	<p>1. 차량등록원부 : 당사 소속 차량 모두 준비해야 하는지요?</p> <p>2. 청렴계약이행서약서도 입찰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낙찰 후에 제출해도 되는지요?</p> <p>3. 제안요청서 p.8~9의 제주삼다수 물량 운영현황을 보면 가, 나, 다항의 수치가 모두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p>	<p>1. 입찰참가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지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지표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2. 입찰공고문 p.7의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3. 가항과 나항은 위탁판매사 물류센터로 입고된 수량과 위탁판매사의 정책에 의해 판매된 수량입니다. 다항은 재고물량이 포함되지 않은 이동물량으로 위탁판매사 물류센터로 입고된 수량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p>

순 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0922-4	<p>4. 위탁판매사 물류센터별 출고빈도를 알고 싶습니다. 각 센터별로 매일 배송이 이루어지는지요?</p> <p>5. 기타물량 제품별 물류거점별 출고 빈도를 알고 싶습니다.</p> <p>6. 인천 및 평택항에서 출고되는 도착지 물동량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p>	<p>4. 제안요청서 p.12~13의 “바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물류센터 배송의 경우 현재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물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사의 정책에 의해 결정될 사항입니다.</p> <p>5. 우리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의 질의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6. 붙임 : 『물동량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붙임 : 물동량 현황

(단위 : 톤)

발지 : 인천항	2009	2010	2011. 8월	소 계
화전	3,771	19,779	14,590	38,140
북부	33,164	39,302	29,655	102,121
동부	14,931	29,602	15,422	59,955
춘천	1,488	1,789	1,342	4,619
인천	23,349	32,639	21,743	77,731
원주	618	646	1,430	2,694
강릉	642	495	707	1,844
속초	848	1,043	570	2,461
태백	371	289	62	722
안양	1,215	1,740	1,504	4,459
안성	-	-	-	0
포승	1,635	10,149	2,269	14,053
합 계	82,032	137,473	89,294	308,799

※ 상기 물량은 “제주삼다수”의 위탁판매사 제품입니다.

(단위 : 톤)

발지 : 평택항	2009	2010	2011. 8월	소 계
화전	39,633	8,397	1,966	49,996
북부	1,739	3,298	3,066	8,103
동부	10,924	4,602	6,472	21,998
춘천	-	21	41	62
인천	20	460	1,872	2,352
원주	1,427	2,239	946	4,612
강릉	1,426	1,518	597	3,541
속초	-	-	-	0
태백	-	-	-	0
안양	2,795	8,593	3,100	14,488
안성	-	-	-	0
포승	41,673	38,058	23,307	103,038
합 계	99,637	67,186	41,367	208,190

※ 상기 물량은 “제주삼다수”의 위탁판매사 제품입니다.